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511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감액배당 등 익금산입(차규근 의원안)	2

I. 개요

1.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51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차규근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7. 17.
- (3) 회 부 일 : 2025. 7.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이하 “감액배당”이라 함)을 익금에 불산입하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액배당 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익금 불산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액배당 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8호라목 및 마목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감액배당 등 익금산입(차규근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제18조제8호)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인정 ○ 익금불산입 제외대상 ①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② 적격합병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3% 재평가적립금 ③ 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3% 재평가적립금 <u><신 설></u>	□ 익금불산입 제외대상 추가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인정 ○ 익금불산입 제외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u>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u> ⑤ <u>그 밖에 실질적으로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u>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차규근의원안 2025. 7. 17. 발의(의안번호 11511)

□ 개정안은 감액배당 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거나 그 밖에 실질적으로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익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순자산증가항목이라 하여도 조세

법률주의 및 조세중립성, 형평과세 차원에서 법인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특정항목이 있으며, 현행법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을 이러한 익금불산입 항목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¹⁾

종전에는 자본준비금을 결손보전과 자본전입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²⁾ 2011년 4월 14일 「상법」 개정으로 적립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³⁾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의 자본준비금은 주주가 납입한 금액이므로 그 금액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투자금을 환급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1)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나.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합병에 따른 제17조제1항제5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 제46조제2항의 적격분할에 따른 제17조제1항제6호의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자본잉여금은 회사의 영업이익 이외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주주나 출자자와의 자본거래에 의해 발생한 잉여금을 말함. 이러한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되는 법정준비금을 자본준비금이라고 하는데, 법정준비금은 회사가 자유롭게 이익의 처분 또는 유보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준비금과는 달리 주식회사 존립의 절대적 요건인 자본금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어 있으며, 자본준비금도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상법」 제460조)

3)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감액하여 받은 배당에 대하여 법인주주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개인주주는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한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 수령 시 익금불산입 한도에 대한 규
정이 없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한 금액의 익금산입 여부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지속되자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감액배당의 익
금불산입 한도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따라서 현행법상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의 경우 내국법
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자본준비금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 등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⁴⁾, 적격합병·분할에 따른 합병·분할차익

4)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
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
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
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
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
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2.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소각 당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중 승계된 3% 재평가적립금⁵⁾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익금으

제외한다)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피합병법인 장부가액(제85조 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 피합병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다.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분할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 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잉여금의 감소액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5. 「상법」 제345조제1항에 따른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법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초과금액 중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

5)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나.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합병에 따른 제17조제1항제5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 제46조제2항의 적격분할에 따른 제17조제1항제6호의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자산재평가법」

제13조(세율) ① 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토지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로 간주함.

- 개정안은 감액배당 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과 그 밖에 실질적으로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형식은 자본준비금 감액이지만 실질은 자본의 환급이 아닌 이익의 분배로 볼 수 있는 감액배당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대상에 포함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개정안은 원래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이었던 금액이 합병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본준비금으로 전환된 후 이를 재원으로 감액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법인주주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 현행법령 하에서도 감액배당 금액 중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되므로 개정안의 입법실익이 크지 않아 보임.⁶⁾

2. 제1호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의 구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기획재정부는 현행 법령 하에서도 사실상 이익분배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개정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감액배당 금액 중 “그 밖에 실질적으로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석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154

으로 정하는 것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이하 생략)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이하 생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이하 생략)
4. 감자차익: (이하 생략)
5. 합병차익: (이하 생략)
6. 분할차익: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 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피합병법인 장부가액(제85조 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나. 피합병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 다.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